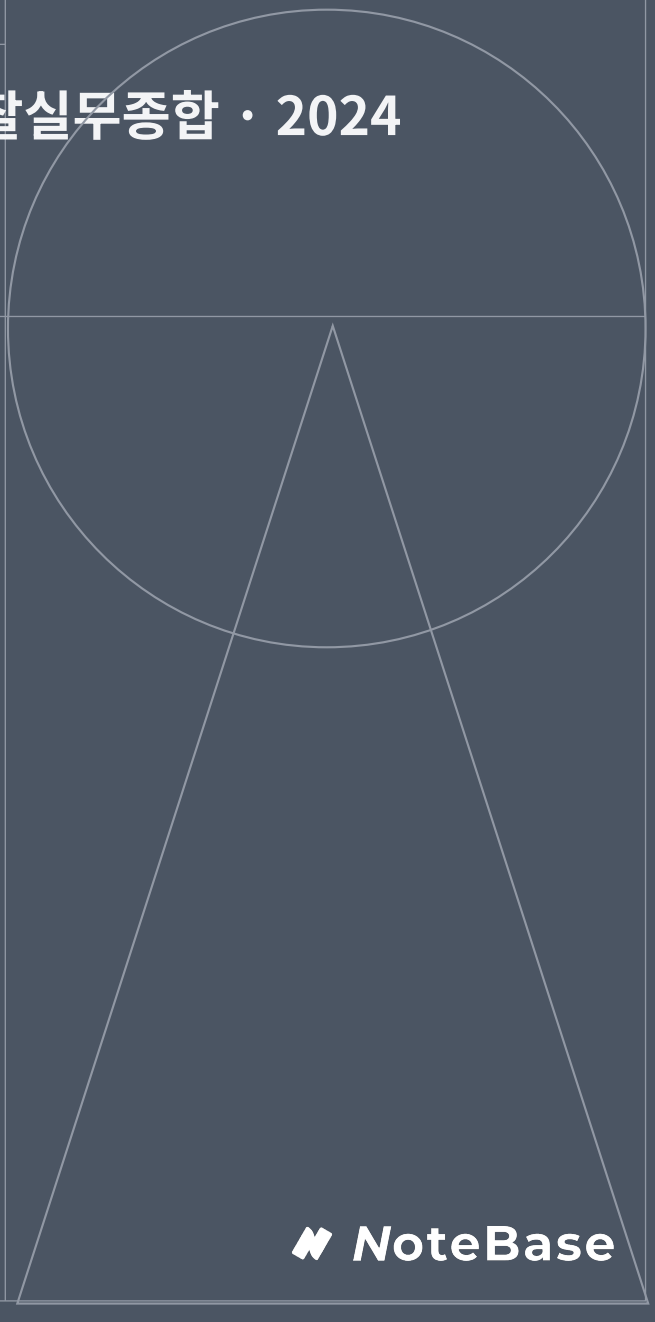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4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4

문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사법경찰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방지를 개념요소로 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활동의 성질보다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모든 경찰작용**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에 따라 보통경찰기관에 배분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활동 자체의 성질보다 **담당 기관과 법정 임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진 경찰작용이라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작용의 성질을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활동을 가려내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③ X: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행정경찰활동**이다. 사법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돕는 활동이므로,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따라서 **비권력적 봉사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보통경찰기관이 법령상 맡은 임무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이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추상적 위험의 경우 경찰권 발동에 있어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경찰관에게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위험에 대한 **인식의 근거와 확실성**에 따라 외관적 위험·위험혐의·오상위험을 구분한다. 합리적으로 위험을 인정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었던 경우, 위험 인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라는 차이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가 객관적으로 감소하고 현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손해'**의 설명이다.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보호법익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침해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위험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을 구분한다. '외관적 위험'은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이다. '위험혐의'는 위험을 의심할 근거는 있으나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경찰관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이다. '오상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찰관이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③ X: 추상적 위험도 **사실과 경험칙에 기초한 위험 예측**이 필요하다.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안에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을 판단하는 반면, 추상적 위험은 일정한 유형의 행위나 상태를 일반적으로 살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판단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위험을 인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위험혐의만 있는 경우에도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사조치**는 할 수 있다. 아직 위험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험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다. 위험혐의만으로 종국적인 위험제거조치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역시 법적 근거와 비례원칙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NoteBase

문 3.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내용과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으로부터 예비검속자들을 총살 집행 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직접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 쓰고 지시를 거부하였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용기있는 결단으로 예비검속자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지역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데모 저지에 임하는 경찰의 방침’(주동자 외는 연행 금지, 경찰봉 사용 유의,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라는 근무지침을 전파하여 시민과 경찰 양측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인권에 유의한 집회·시위 관리를 강조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간부 1기로 경찰에 투신하여 1952년 서울 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군부로부터 정권에 합류를 권유받았으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경찰에서 퇴직하였다.
㉣ 1950년 순경으로 임용, 1986년 총경으로 승진하였지만, 수사현장을 끝까지 지킨다는 의지로 경찰서장 보직을 희망하지 않고 수사·형사과장으로만 재직하였다. MBC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며, 1963년, 1968년, 1969년에 치안국의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다.

① ㉠: 문형순, ㉡: 안병하, ㉢: 안맥결, ㉣: 최중락
② ㉠: 노종해, ㉡: 안종삼, ㉢: 안맥결, ㉣: 이준규
③ ㉠: 문형순, ㉡: 안병하, ㉢: 김해수, ㉣: 이준규
④ ㉠: 노종해, ㉡: 안종삼, ㉢: 김해수, ㉣: 최중락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 적고 거부한 인물은 **문형순**이며, 여자경찰간부 1기로 입직하여 군사정권 참여를 거부한 인물은 **안맥결**이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받은 뒤 공문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적어 집행을 거부하였다. 상부의 부당한 처형 명령보다 주민의 생명 보호를 우선한 행적이 문형순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안병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서 전남지역 치안을 책임졌다. 주동자 외 연행 금지, 경찰봉 사용 유의, 희생자 발생 방지 등을 지시하며 강경진압보다 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중시하였다.

㉢ 안맥결: 1946년 여자경찰간부 1기로 입직하여 1952년 서울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군사정권 참여 권유를 거부하고 퇴직**한 행적도 안맥결에 해당한다.

㉣ 최중락: 195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수사·형사 분야에 전념하였으며, 총경으로 승진한 뒤에도 경찰서장 대신 수사·형사과장으로 활동하였다. **MBC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며, 1963년·1968년·1969년 포도왕으로 선정된 인물이 최중락이다.

따라서 ㉠ 문형순, ㉡ 안병하, ㉢ 안맥결, ㉣ 최중락으로 연결되므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기본조직과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비용에 관하여 **국가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선지의 경찰청장은 위임 대상이 아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 · 도경찰청장)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 · 의결을 통하여 시 · 도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 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권을 시 · 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NoteBase

문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③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 ·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NoteBase

ㄴ

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2026년 10월 2일 당시 검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경과조치에 따라 결격사유가 유지**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3. 공소청 검사 ·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2015호, 2026. 9. 29.) 제2조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ㄷ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ㄹ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oteBase

문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상황은 감사할 수 없다.

④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번

①

민원사무·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위탁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④

권한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옮기므로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행사**한다. 내부위임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할 뿐이므로 **위임관청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NoteBase

문 8.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 면직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④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정답 1번

①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이다.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하려면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NoteBase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것은 **직위해제 사유**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3.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이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와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정답 3번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NoteBase

④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내국인·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NoteBase

문 10.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정답 1번

①

취업 사실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반환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고용보험법상 행정조사로서 형사수사의 피의자신문과 구별**된다. 이 행정조사에는 피의자신문에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고지규정의 적용 문제이며, 모든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자체가 부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에 앞서 이 사건 취업 여부를 조사할 때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행정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NoteBase

②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호흡측정·혈액검사는 **형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이면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48조의2 제2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3조 제1항 제1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제2항), 위와 같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경찰행정조사자의 지위를 겸하는 주체가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교통상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④

조사로 얻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사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정답 4번

㉠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반드시 질문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NoteBase

ㄴ

정지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ㄷ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목적·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행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알려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ㄹ

불심검문을 위해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NoteBase

문 1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대상자의 행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응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②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흉기(칼·도끼·낫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①

순응은 경찰관의 지시·통제에 따르는 상태로,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1. 대상자 행위
2.1.1. 순응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NoteBase

②

소극적 저항은 지시·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동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거나 몸의 힘을 빼고 버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1. 대상자 행위
2.1.2. 소극적 저항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적극적 저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상태**이다. 체포를 피해 도주하거나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을 밀거나 침을 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1. 대상자 행위
2.1.3. 적극적 저항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④

흉기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선지는 이를 '폭력적 공격'으로 잘못 연결하였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1. 대상자 행위
2.1.5. 치명적 공격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엽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국에서 실적주의 확립을 촉진한 사건은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이며, 1883년 펜들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잭슨 대통령은 엽관주의의 확대와 관련된다.

보기별 해설

㉠ O: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공헌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정치지도자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용하므로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솔**이 쉬워지고 공공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 X: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을 촉진한 사건은 1881년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의 암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제도 개혁 요구가 커졌고,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어 능력과 경쟁시험에 기초한 임용이 제도화되었다.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주의의 확대와 관련된 인물이다.

㉢ O: 엽관주의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도 약해지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O: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중시한다. 다만 정치적 영향의 배제와 엄격한 절차 준수에 치중하면 적극적인 인재 발굴·육성보다 **부적격자의 배제와 형식적 공정성**에 머무르기 쉽다. 인사행정의 소극화·형식화는 이러한 전통적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이며, 이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②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정답 4번

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 방식으로 결재할 때 성립**한다. 서명에는
전자이미지서명·전자문자서명·행정전자서명도 포함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NoteBase

③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면 도달한 것이다.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경찰장비 관리규칙」상 무기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가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④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탄약고는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전지 등으로 조명하며 방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폭설비를 갖추면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⑦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무기 · 탄약고 열쇠의 보관)
② 집중무기 · 탄약고와 간이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관리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집중무기 · 탄약고의 경우
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 · 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

NoteBase

③

술자리나 연회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④

권총은 **첫 탄에 공포탄, 둘째 탄부터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간첩작전이나 중요범인·무기 또는 흉기 사용 범인의 체포 및 위해 방호를 위해 불가피하면 **첫 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 ·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급비밀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시·도의 교육감, 경찰청장은 II급 및 II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2번

①

Ⅰ급비밀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해의 우려**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Ⅱ급비밀의 현행 기준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이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5.19>
1. 1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 국가의 방위계획 · 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2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시·도의 교육감과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인 경찰청장은 **II급·III급비밀 취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9조(비밀 ·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② 2급 및 3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3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NoteBase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보안업무규정 제12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위한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시행하되, 그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보안업무규정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NoteBase

문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를 적은 **기명의 문서**로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경위·취지 등이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NoteBase

③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감사·수사·조사 종결기한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NoteBase

문 18.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1번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간사인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위원회인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점검) 제13조제2항의 간사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NoteBase

③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원인 사실의 **공소시효·징계시효·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조사가 필요하면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 · 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 · 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 · 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NoteBase

문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정답 4번

①

금품수수 금지의 일반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이다. 이를 초과하면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수수·요구·약속이 금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NoteBase

③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④

업무추진비로 보내는 화환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 사비 경조사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다. 따라서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별도의 경조사비 10만원 모두 수수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NoteBase

문 20.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Wil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Sher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청렴한 신임경찰이 선배경찰에 의해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는다. '조직의 체계적 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설명은 **구조원인 가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윌슨(Wilson)의 '전체사회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의 부패 용인과 조장**에서 찾는다. 경찰을 둘러싼 사회가 부패를 묵인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경찰관도 그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부패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② O: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의 수용이 더 큰 부패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혜택에 익숙해지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점차 느슨해지고, 나중에는 심각한 부패까지 정당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③ X: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경찰관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는다.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채용단계에서 부패 성향이 있는 사람을 걸러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조직의 체계적 결함'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의 관점이므로 이 부분을 개인적 결함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의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 안에서 부패가 학습·전승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청렴했던 신임경찰도 선배경찰의 행태와 조직의 부패 관행을 배우면서 부패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 처음부터 지닌 결함보다 조직의 내부 규범과 사회화에 원인을 둔다.

NoteBase

문 21.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상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상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당편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적극행정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 · 직원(이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NoteBase

ⓒ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령·지침의 변화에도 과거 규정이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이다.

NoteBase

문 2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원인론과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은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을 중요한 3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고 보았다.

① 뒤르켐(Durkheim) - 아노미이론

② 코헨(Cohen) - 하위문화이론

③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자기통제이론

④ 쇼와 맥케이(Shaw & Mckay) - 사회해체이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전이지역의 높은 범죄율을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적 통제의 약화**로 설명하는 것은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이다. 낮은 경제적 지위·민족적 이질성·거주 불안정성은 이러한 해체를 가져오는 지역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NoteBase

핵심 풀이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 범죄율의 지역적 차이를 지역사회의 유대와 통제 능력에서 찾는다. 전이지역의 높은 범죄율을 주민 간 관계가 약하고 공동체가 규범 준수를 이끌 힘이 부족한 점과 연결한다. 지문의 낮은 경제적 지위·민족적 이질성·거주 불안정성은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는 세 조건이다. 이 조건들이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해져** 범죄가 발생하기 쉬워진다고 본다.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규제력이 약화된 상태**에 주목한다. 사회가 개인의 욕망과 행동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문처럼 특정 지역의 세 가지 구조적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구별된다.

코헨의 하위문화이론: 하층 청소년이 중산층의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받으면서 겪는 **지위좌절**에 주목한다.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며 중산층의 기준을 거부하는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지문의 전이지역·세 가지 지역적 조건·공동체 통제 약화에 대응하는 연결은 ④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이다.

NoteBase

문 23.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놀이터와 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울타리 및 표지판의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③ '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기능을 처음 설계되거나 개선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의 증대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범행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조명 및 조경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활동의 활성화'는 공공장소의 이용과 주민 교류를 늘려 **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자연적 감시로 이어지게** 하는 원리이다. 놀이터·공원이나 이용하기 좋은 벤치·정자는 주민을 모이게 하여 '거리의 눈'을 늘리고 범죄 목적의 접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공공장소에 모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이용하는 주민 자체가 주변을 살피는 '거리의 눈'**이 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주민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은 자연적 감시를 늘리고 수상한 접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놀이터·공원을 설치하거나 벤치·정자를 이용하기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유도하는 사례이다.

② X: 사람을 정해진 경로로 유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접근 부담을 높이는 것은 **'자연적 접근통제'**의 설명이다. 출입구를 최소화하거나 통행로를 설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영역성의 강화'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관리의 범위를 드러내고 주민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원리이다. 선지의 울타리·표지판도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되는 공간임을 알리는 용도로 설치한다면 영역성 강화의 사례가 된다.

③ X: 시설을 처음 설계하거나 개선한 의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한다는 정의와 청결 유지·파손의 즉시 보수는 '유지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을 높이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주민이 시설을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감시 기회와 주민 간 교류를 늘리는 것이므로, 시설의 상태와 기능을 지속시키는 유지관리와 구별된다.

④ X: 가시권을 확보하고 외부 침입을 관찰하기 쉽게 하여 발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자연적 감시'**의 설명이다. 건물 배치와 조명·조경을 통해 주변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그 사례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시야의 확보보다 출입구·통행로 등의 설계로 사람의 이동을 유도하고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2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2개월간 보존한다.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신고의 대응코드 중 code 1 신고로 분류한다.

③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112신고 접수·처리와 관련된 녹음·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 녹음 · 녹화자료: 3개월간 보존

②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신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드 0**으로 분류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1. 코드 0 신고: 코드 1 신고 중 이동성 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신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

③

신고가 완전하게 수신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③ 112근무요원은 112신고가 완전하게 수신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112신고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NoteBase

④

지령 없이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대상은 **코드 4 신고**이다. **코드 3 신고는 출동 경찰관에게 현장출동과 조치 등을 지령해야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지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0 신고부터 코드 3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출동할 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신고의 현장출동, 조치, 종결하도록 지령해야 한다.
②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 또는 112신고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NoteBase

문 2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은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정답 3번

①

집단민원현장에는 **주주총회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집행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 문화 · 예술 · 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②

도급받을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NoteBase

③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것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이다. 경비지도사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이 결격사유이며, 선고유예만으로는 결격되지 않는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시설경비업무의 허가에 필요한 경비인력은 **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2025.1.7>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NoteBase

문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NoteBase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2026.4.21>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할 수 없다**. 두 차례 연장이 허용되는 것은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조치이며,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⑦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NoteBase

문 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1, 2번

①

재수사 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증거 등의 인멸·은닉·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행 재수사요구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45조의8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8조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NoteBase

②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은 이를 **대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검사에게 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이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가 적절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문 28.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선별 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④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정답 3번

①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전자정보 자체와 이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경찰관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장 압수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선별압수**가 원칙이다. 해시값 확인 등으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도 확보해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경찰관은 압수 · 수색 · 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NoteBase

③

협조 거부 등으로 현장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다**. 원본 반출은 물리적·기술적 장애 등으로 **복제본 획득·반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곧바로 원본을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집행 방법)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 · 수색 · 검증 현장에서 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 · 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 · 이미징에 의한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 ·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 · 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④

각 처리 단계의 보관 주체 사이에 연속적인 승계 절차가 유지되도록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별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위하여 업무처리자 변동 등 이력을 관리할 것

NoteBase

문 29.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GHB는 사용 후 통상적으로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그 효과는 3시간 정도 지속되며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정답 4번

①

객관적 물증이 없는 마약류 매매사건에서 매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모두 필요**하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②

원료물질은 **그 자체가 마약류는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물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③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내시경 등의 진정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하면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IpJoMshsFLgKKHCAvffpRH91rWdUFjR/view?usp=drivesdk

④

GHB는 액체 상태에서 무색을 띠지만 **약간 짠맛이 있으므로 '무미'가 아니다**.

NoteBase

문 30.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사태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고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적(즉응적) 활동이다.

② 현재의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으로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나 질서유지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은 갖지 않는다.

③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④ 경비사태가 발생할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 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과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비경찰의 현상유지는 질서의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태적·적극적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비사태는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대응**해야 한다는 즉시적(즉응적) 특성을 가진다.

② X: 경비경찰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현상유지적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변화를 막는 정태적·소극적 유지에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다. 안정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동태적·적극적 질서유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③ O: 경비경찰은 사태가 발생한 뒤 이를 진압하는 역할과 함께, 발생 전부터 위험을 살피고 사태를 막는 경계·예방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사전 예방과 사후 진압**을 함께 담당하므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④ O: 경비사태에는 개별 경찰관의 활동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여러 인원이 조직적·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부대를 단위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부대편성, 관리 및 운영을 갖추는 조직적 부대활동이 중시된다.

NoteBase

문 31.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채증자료는 지체 없이 경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동영상 촬영담당·신변보호원 등 **3명 1개조 편성이 원칙**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②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수사가 필요한 채증자료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경비부서로 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1조(채증자료 송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채증자료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채증이 20분 이상 계속되면 **20분이 지날 때마다 채증 중임을 다시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NoteBase

④

채증은 **범죄행위 중 또는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범죄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해가 임박하고 범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증거 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전에도 채증할 수 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7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NoteBase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대응단계에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정답 1번

NoteBase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지역의 수습·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과 연결되는 **복구단계**의 조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 ·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 조정한다. <개정 2017.7.26>

NoteBase

③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상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NoteBase

문 33.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자전거의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을 경우의 범칙금은 3만원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범칙금은 10만원에 해당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자전거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전거의 **음주운전 범칙금은 3만원**이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4vxcQlXffSay-d1LHqwML2BNfk2o0FR/view?usp=drivesdk

③

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④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정지한 차의 승하차자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3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②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술에 취한 乙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2번

①

교통사고의 법정 개념은 실제 운전 중 사고만이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상·손괴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 자체가 아닌 행위도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므로, 직접 운전한 행위인지 여부만으로 적용 범위를 가르지 않는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NoteBase

②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는 측정기 사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와 운전 여부 확인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음주운전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만취한 채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있는 사람에게 측정을 위해 내리라고 요구한 것은 이 절차를 시작한 것이므로, 이미 직무에 착수한 상태이다.

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③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에 따른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실수로 장치를 건드리거나 주차상태·도로여건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④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NoteBase

문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에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 · 작성 ·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③

상시 출입이 금지되고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 · 교육 · 종교 ·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NoteBase

④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한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NoteBase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보완 통고를 할 때에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4번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된 주최자는 **신고서상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신고서 기재 사항이 미비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의 보완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NoteBase

④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구두 통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집회 금지통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사전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X)
③ ㉠(O) ㉡(O) ㉢(X) ㉣(O)
④ ㉠(O) ㉡(X) ㉢(X) ㉣(X)

정답 1번

㉠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②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NoteBase

ㄴ

집회 금지통고는 법률상 사전금지 사유에 근거하여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의 금지를 알리는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금지통고 제도 자체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집회 금지통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집시법상 집회 사전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시법 제9조에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ㄷ

집회의 금지·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고, 조건부 허용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위와 같이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NoteBase

㉣

사전 금지·제한을 위반한 집회라도 실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사전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해산을 명하거나 해산명령 불응을 처벌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NoteBase

문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정답 4번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전입 후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이에 협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를 위해 **자립생활의 장애를 해결하거나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 ·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NoteBase

④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NoteBase

문 39.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정답 1번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해당 범죄 또는 그 경합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선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은 이 요건과 다르다.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NoteBase

③

출소 전에는 교도소 등의 장을 거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같은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한다.

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NoteBase

문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 · 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 교통할 수 있고, 체포 ·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외국인 변사사건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는 **검사가 아니라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4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해당 군함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④

총영사·영사·부영사의 사무소에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②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